●산림청고시 제2022-124호

「산지관리법」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30일

산림청장

2023년도 1만 ㎡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

- 1. 산지전용(일시사용)허가 · 신고지 (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)
 - 경사도 10도 미만 : 75.904천원
 - ○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: 223,163천원
 -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: 294,114천원
 - 경사도 30도 이상 : 383.756천원
- 2. 토석채취(매각)지 및 광물채굴지
 - 경사도 10도 미만 : 201,374천원
 -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: 387,694천원
 -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: 505,506천원
 - 경사도 30도 이상 : 618.683천원
- 3. 「산지관리법」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「엔지니어 어링사업대가의 기준」 별표1에 의한 "공사감리"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.
- 4.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제37조제1항단서, 제39조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추가하는 경우(재해예방시설 설치, 특수공법 녹화, 시설물 철거, 되메우기, 생태복원 비용 등)에는 실제 예상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